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		
의안번호	제15호	제 출 자	조용훈 의원 등 8명
제 출 일	2024. 2. 13.	회 부 일	2024. 2. 13.

1. 제안이유

논산시민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안전보험 및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(안 제5조)
- 나. 보험금 청구 및 지급(안 제7조)
- 다. 시민안전사고 위로금 지원(안 제10조)
- 라. 지원대상(안 제11조)

3. 검토의견

- 가. 논산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논산시민 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나 피해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보장받는 정책보험으로 불의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리라 봄.
- 나. 「지방자치법」제28조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